

KOGAS 하도급 관리지침

[시행일자 : 2023.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하도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계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계약업무관리지침 등에 의거 시설공사의 하도급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하도급 관리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등의 하도급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라 함은 우리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우리공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4. “공사주관부서”라 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계획에 의거 단위공사의 시행계획을 작성, 승인 또는 공사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사시공부서”라 함은 공사의 시공,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EHSQ주관부서”라 함은 본사 EHSQ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본사 및 사업소에서 해당 공사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하도급 시행계획) ①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부터 정상적으로 하도급이 계획되고, 하도급관리가 용이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의거하여 하도급시행 계획서를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이 제출하는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적격심사 하도급사항 및 그 외 하도급 사항, 하도급 예정업종, 공종, 예상 하도급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하수급인의 선정방식(하도급 입찰조건, 하도급 현장설명서 등 관련서류 일체)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1호) <개정 2020.06.08.>
- ③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제출된 하도급시행계획서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거하여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하도급시행변경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하도급시행계획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통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 체결시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하도급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게 그 하도급계약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하도급 통지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 대장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1)
- ④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관련사항의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직접 통보할수 있다.
- ⑤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수급인으로부터 통지서류를 접수한 후에 하도급 통지, 적정성 심사승인서류(별표1) 및 하도급 통보서류 검토사항(별표2)등에 의거하여 수급인에게 확인·승인·통지하여야 한다
- ⑥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통지, 승인시에는 우리공사 계약업무관리지침 제58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⑦ 하도급 승인 및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위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계약내용의 하수급인 확인) ①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류 일체를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 하수급인이 검토·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 ② 하수급인은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가 통보한 하도급계약관련 서류 일체를 검토·확인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급인과 이중계약 등 불공정 계약의 유·무를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적격심사 관련사항) ① 수급인은 당해공사 입찰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던 하도급 관련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심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별표 1)

-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변경 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하도급부분 심사내용의 변경은 심사당시 평가한 득점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 적정성심사·승인 등)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하도급 적정성심사·승인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별표 3)

제9조(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①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에게 기성·준공대가 및 선금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후에 그 대가지급 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기성·준공대가 및 선금을 받은 날 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의 지급조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운영)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지급내역을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6호)

- ②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수령내역을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7호)

- ③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하도급 대금 지급형태(현금, 어음, 대물등 기타방법),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선금의 지급기일 준수, 지급방법 등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가 지급시, 하수급인의 거래상대자인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 등에게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한 대가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가지급 여부 및 대가지급 채무 불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급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하고,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방식, 지급일 등)을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17호)

- ⑤ 수급인은 제4항의 지급채무 불이행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하도급 대가지급 시 미불금액 및 체불금액을 해당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건설공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①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보증서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개별 수급인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의 지분을 범위안에서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보증서를 일괄 교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변경(계약금액 증액,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보증서를 변경 발급하여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게 그 보증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경우의 직접지급 조건은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및 특수조건 제5조에 따른다.

제1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라 공사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하수급인의 공사 역무가 조기 종료 되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없이 하도급 변경계약 및 정산 등을 위해 하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의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공사 역무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 ⑤ 수급인은 발주자와의 공사 준공정산 완료시 지체없이 하수급인과의 준공정산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급인과의 정산금액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하도급을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준공정산 합의서 및 정산결과를 반드시 발주자에게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 ⑥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준공정산 합의서 및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그 결과를 하수급인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제14조(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① 발주자(공사주관부서장)는 하도급 이행실태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점검일 15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8호)

- ② 수급인은 원활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 관련서류(하도급 현장설명서 등 하도급 입찰 및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서류 일체) <개정 2020.06.08.>
 2. 설계변경 관련서류
 3. 하도급 현장대리인 관련서류
 4. 하도급 대금지급 입증서류
 5.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통장 사본
 6.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
 7. 원도급사 직영분 대금지급내역 일체(자재·장비대금 지급 증빙서류 등) <신설 2020.06.08.>
 8. 기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입증자료 일체 등 <개정 2020.06.08.>
- ③ 발주자(공사주관부서장)의 하도급이행실태점검시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

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하도급 이면계약 등(제 2항 1호 내지 8호에 따른 서류와 하도급 통보서가 상이한 경우) <개정 2020.06.08.>

2.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 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3. 하도급 계약자료 공개 : 제18조 규정에 따른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적정 이행 여부 등 <신설 2022.10.24.>

④ 발주자(공사주관부서장)는 이행실태점검 결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사항 발생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시정조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정조치 기간을 부여하여 소명 및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이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에 발주자(공사주관부서장)는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52조“불량업체 입찰참가제한”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하수급인이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에 발주자(공사주관부서장)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⑦ 상기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공사주관부서장)는 공사가 준공된 후에도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준공정산 결과에 대해 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최종 점검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제 ④항 내지 ⑥항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제15조(부정당하수급인의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당해공사 시행 중 다음 각 사항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을 발생하게 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지정할수 있으며, 하도급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별표 4)

1. 안전대책 등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공사관리 불안전 요소로 인한 일정 벌점 이상을 부과받은 경우

- ② 중대사고 해당부서장(이하 “심의제안부서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EHSQ주관부서장에게 관리위원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EHSQ주관부서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별지 서식9호) 단, 현장의 확인·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수 있다.
- ③ 관리위원회는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지정할 경우에 의결일 이후 7일부터 1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규 하도급 참여를 배제토록 의결하여야 한다.(별표 5)
- ④ 공사시공부서장 등은 제1항 2호에 의거하여 하수급인의 불안전 요소를 파악하여 별점을 부과하고 별점부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주관부서장 및 EHSQ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별표 6)
- ⑤ EHSQ주관부서장은 제4항에 의거한 별점 현황과 관리위원회에서 지정된 부정당하수급인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별지 서식12호)
- ⑥ 공사시공부서장은 하도급관련업무(하도급 통지, 하도급 적정성심사·승인 등) 추진시 EHSQ주관부서장에게 부정당하수급인의 지정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 ⑦ 공사는 부정당하수급인에게 이 지침 이외의 다른 규정에 의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 ⑧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지정된 자는 심의결정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재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상생경영 협의체 운영)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포함한 상생경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참여확대 및 협력강화방안 등에 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관계법령 적용 등) ①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의 금지 <신설 2020.06.08.>

1. 수급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불공정행위 등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련법령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2-1.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 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등

2-2.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3.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3-1.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2. 수급인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3. 그 외, 관련법령에서 규정 또는 보호하는 하수급인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수급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

4. 상기 ① 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② 이 지침 이외의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기타 당해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법령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20.06.08.>

③ 이 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06.08.>

제18조(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공사시공부서는 수급인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열린경영>경영공시>하도급 계약정보)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② 제1항의 공사 홈페이지 게재는 하도급 등의 통보(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적정성 심사·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일 이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8조 “하도급적정성 심사·승인”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급인과 합의 후 시행한다 .

② 이 지침 시행일 이후 공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7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제1항의 적용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지침2000-25, 2000.9.17.)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례) ① 제15조 “부정당하수급인의 지정 등”과 별지 서식 3호의 “하도급부분금액 산식”에 관한 적용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 하도급 계약 통보 또는 승인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0조(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운영) 제4항 및 제5항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이행중인 계약에도 합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

②제15조(부정당하수급인의 지정 등) 제4항 별표 6 ‘공사관리 불안전 요소에 대한 별점부과 기준’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이행중인 계약에도 합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08>

이 지침은 2020년 07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24>

이 지침은 2023년 01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